

의안번호	제 203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3월 7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3
----------	-----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계획 등의 수립·시행과 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 또는 지원 등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반도체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안 제5조~제10조)
- 반도체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안 제11조)
- 반도체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12조)
- 육성사업의 수탁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안 제13조)
- 반도체산업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안 제14조)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체 : 불 임

6. 비용추계서 : 불 임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반도체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

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도체 관련 벤처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과학인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반도체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
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반도체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
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
의·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

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반도체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관련 기업의 유치·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6.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행사의 개최·유치, 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
7.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육성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그 밖에 도지사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기업·법인 및 단체

제13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수탁자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범인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 (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 (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 산업등이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전략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반도체산업 육성 및 중장기 지속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계획 수립 근거 마련
-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지원, 위원회 설치·운영·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 근거 마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협회·협의회 등 육성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4조(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안 제12조(육성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추계의 전제	추계 결과	재원조달방원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000천원	- 도비 100,000천원
충북 반도체산업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100,000천원	- 도비 100,000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과학인재국 산업육성과장 이용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0,000	20,000	120,000	20,000	20,000	200,000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	100,000	-	-	100,000
충북 반도체 산업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0,000	20,000	120,000	20,000	20,000	200,000
	세외수입	20,000	20,000	120,000	20,000	20,000	200,000

※ 2022년 10월 충북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